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기준 문서: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) + 안내서 (고시 2025-9호 · 안내서 2025.11) · 적용 범위: 법정 의무(개인정보처리자) · 확인일 2026-10-23

조항 44개의 PCFILTER 지원 유형(지란지교소프트 판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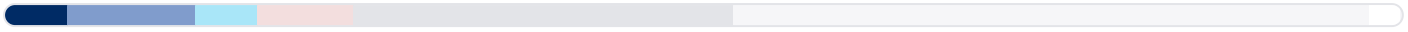

직접 지원 2 부분 지원 4 증적 지원 2 재확인 중 3 고객 관리 필요 12 외부 솔루션·별도 통제 필요 20 확인 중 1

재확인 중 3개는 판정 규칙에 따라 지원 유형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 아래 표에서 뺐습니다.

제품이 돕는 주요 조항

조항	요구	지원 유형
제10조③	보조저장매체 반출·입 통제 보안대책	직접 지원
제12조②	종이 인쇄물·외부 저장매체 등 출력·복사물 안전조치	직접 지원
제6조의2②	위험 분석 + 위험 감소 보호조치 시 다운로드·파기 PC 차단 예외	부분 지원
제12조①	처리시스템 출력 시 용도 특정·항목 최소화	부분 지원
제13조①	복원 불가 파기(완전파괴·소자·초기화·덮어쓰기)	부분 지원
제13조②	일부 파기 후 복구·재생 방지 관리·감독	부분 지원
제9조①	백신 설치·운영,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	증적 지원
제9조②	경보·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	증적 지원

고객이 할 일

- 인터넷 홈페이지 유·노출 점검, 처리시스템 측 조치
- 위험 분석 수행·결과의 내부 관리계획 반영, 다운로드 건수 제한·권한 최소화(처리시스템 측)
- DB·처리시스템의 이용자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저장
- 모바일 기기 저장 개인정보 암호화, 암호화 대상(이용자 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) 범위 정의
- 백신 도입·자동 업데이트, 악성프로그램 삭제·치료 대응, 처리시스템 백신 운영
- 경보·보안 공지 모니터링, 업데이트 실제 적용, 처리시스템 패치 형상관리

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적용 여부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지원 유형은 지란지교소프트의 판단이며 인증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. 실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발행 지란지교소프트 데이터사업부문 · 자사 제품 기준 · AI 판정 후 원문 대조 · 판정 v15(2026-10-23) · 생성 2026-11-02
근거 문서: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(2025.11) https://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217&mCode=D010030000&nttId=11641
조항별 원문 출처는 사이트의 조항 카드에 있습니다.